

은행은 을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 채 보 증 약 정 서

(전환사채용)

수 입
인 지

20 년 월 일

인감대조

(갑)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인)

주 소

(을)

(인)

주 소

위 갑과 을 사이에 을이 20 년 월 일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제 회 사채(이하 “사채”라 합니다)에 대하여 갑이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함에 있어 을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조항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조 보증의 부탁과 승낙

- ① 을은 갑에게 다음 사채원리금의 지급보증을 부탁하였고 갑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사채지급보증 총액은 금 _____ 원으로 합니다.
1. 사 채 원 금 : 금 _____ 원의 _____ %인 금 _____ 원
2. 사채이자총액 : 금 _____ 원
- ② 위 이자총액은 사채발행일 현재 제4조 제6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 보증기간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이 사채에 대하여 갑이 보증하는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합니다. 그러나 사채권자가 갑에 대하여 사채원리금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원금의 _____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일로부터, 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로부터 각 3월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이행청구가 없으면 갑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전환청구로 인하여 전환된 부분에 관하여는 사채원금의 _____ %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이자에 대하여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보증이 실효됩니다.

제3조 보증료 등

- ① 갑이 보증한 금액에 대한 보증료율은 연 _____ %로 하고 을은 다음의 기일에 그 다음 기일까지의 보증료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매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② 보증료 계산에 있어서 보증료 징수대상 금액은 지급보증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 ③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료 징수대상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료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하되, 차기의 보증료 지급일에 정산하고 최종의 보증료 지급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정산하기로 합니다.
- ④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일에 보증료를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_____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갑에게 지급합니다.
- ⑤ 을은 제11조에 의한 주채무의 이행을 아니한 경우에는 곧 그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그 이행일까지 또는 갑의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갑이 정하는 특별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제3항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그 통지도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에 준합니다.

제4조 사채의 발행조건

이 계약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채의 명칭 : 제 회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원
3. 사채권의 형식 :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
4. 사채권의 종류 : 만원권의 중
5.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권의 권면금액의 %
6. 사채의 이율 :
 - 가. 고정금리인 경우
사채발행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연 %로 합니다.
 - 나. 변동금리인 경우
한국증권업협회가 산정·공시하는 매 이자지급기간 초일의 직전영업일의 91일물량도성 정기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가산금리 %를 가산한 율로 합니다.
 - 다. 기 타 :
7. 원금상환방법과 상환기일 :
20 년 월 일에 사채원금의 %를 일시에 상환합니다. 그러나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합니다.
8. 이자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이자는 사채발행일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다음 이자 지급기일에 매 개월분씩을 선급(후급)합니다. 그러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9. 사채원리금지급장소 :
10. 사채의 납입기일 : 20 년 월 일
11. 사채의 발행일 : 20 년 월 일
12. 사채의 이자기산일 : 20 년 월 일
13. 사채발행의 방법
사채의 원금 원은 공모에 의하여 일시에 발행합니다.
14.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액의 전액을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을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가. 전환조건
 - 1) 전환비율
각 사채권면액(2매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 시에는 그 권면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전환청구한 연도의 초일(발행 당해연도에는 발행일)부터 전환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의 이자를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 전환가격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을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증권선물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 구주의 증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 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증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 보통주 기준주가인 원의 %에 해당하는 원을 전환가격으로 합니다.
 - 3) 전환가격 조정
 - 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을 적용합니다.

$$\text{조정 후 전환가격} = \frac{(\text{조정 전 전환가격} \times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 발행가액})}{\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주간사 회사가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 다) 전 가)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다.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의 발행일이후 _____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_____일전(20____년____월____일)까 지로 합니다.
- 라.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을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 마. 전환의 효력발생
1) 전환의 효력 : 전환은 _____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 으로 보아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부터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당해 전환사채 발행년도 중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일 에 전환된 것으로 합니다.
- 바. 유·무상증자의 제한
을은 전환권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금액 미만이 될 경 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사. 잉여금 사용제한
동 사채발행 당시의 잉여금을 전환권 행사시까지 현금으로 배당하지 아니합니다.
- 아. 미발행주식의 보유
을은 사채권의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미발행주식) 수를 보유합니다.
- 자. 등기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합니다.
- 차.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가 있는 월의 익월 20일부터 _____에서 교부합니다.
- 카. 전환가격 조정 시 공시방법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는 을은 증권관리위원회, 증권선물거래소 및 주간사회사에 통보하며, 공고는 서울 특별시에서 발간되는 _____에 게재합니다.

제5조 사채권의 기재사항

사채권에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제10호 제외)과 다음 사항을 적으며 을이 기명날인 후 갑이 이를 확인하고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

1. 을의 명칭 : _____
2. 갑의 명칭 :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3. 사채의 보증총액: 금_____원
 - 1) 사채원금 : 금_____원의_____ %인 금_____원
 - 2) 사채이자 총액 : 금_____원
4. 보증사채인 사실의 표시 - 사채권 앞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이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합니다.

20____년____월____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부(점)장 (인)

5. 지급보증기간의 표시 및 그 기간 내에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 채무가 소멸된다는 뜻의 표시 - 사채권 앞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 이 사채를 보증하는 기간은 20____년____월____일부터 20____년____월____일까지로 합니다. 그러나 사채권자는 원금의 _____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환기일로부터, 이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각 3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행청구가 없으면 보증 채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전환청구로 인하여 전환된 부분에 대한 원금의 _____ %에 해당하는 금액 및 그 이자에 대하여는 전환청구일로부터 보증이 실효됩니다.

6. 사채보증을 위한 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인 사실의 표시 - 사채권의 앞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이 사채는 20 년 월 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 _____ 간에 체결된 제 회 전환
사채의 원리금 지급보증약정의 조건에 따라 발행된 사채입니다.

7. 전환청구권의 행사확인에 관한 사항 - 사채권의 앞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이 사채권은 20 년 월 일자로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사채권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전환권행사 확인자
명의개서 대리인

8. **갑이 확인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변조·위조 기타의 사고채권에 대하여는 보증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의 표시 - 사채권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이 사채가 제 회 사채임을 확인하고 기명날인 합니다. 이 확인이 없는 채권이 나 변조·위조 기타의 사고채권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보증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9.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상 호 :

주소 :

10. 사채권의 번호 :

제6조 사채청약서의 기재사항

을은 사채청약서에 상법 제474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다음의 사항을 적습니다.

1. 제5조 제4호, 제5호, 제7호의 사항
2. 갑, 을 사이에 보충에 관한 조건은 따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이를 비치 공시한다는 뜻

제7조 사채권의 작성과 견양제출

을은 사채권의 서식을 갑과 협의하여 작성하며 사채권을 인쇄한 후 그 견양을 갑에게 제출합니다.

제8조 사채권의 분할·병합 금지

을은 사채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아니합니다.

제9조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

- ① 을이 사채원리금 지급업무를 갑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지급자금을 그 지급기일 전일까지 갑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 ② 을이 사채원리금 지급업무를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계약체결 후 곧 그 계약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을은 사채원리금의 지급기일 전일까지 그 지급대행자에게 지급자금을 인도하기로 합니다.
 2. 지급대행자가 을로부터 제1호의 지급자금을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지급기일 영업개시 즉시 지급불능의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주채무 이행의무와 통지의무

- ① 을은 갑이 보증한 사채원리금 지급의 주채무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전에 지급자금을 제9조에 의한 지급대행자에게 인도하거나 기일에 직접 그 채무를 이행하여 갑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합니다.
- ② 을은 사채이자 또는 원금의 지급기일의 5일전까지 그 지급의 가능여부를 갑에게 통지합니다.
- ③ 을은 제1항에 의한 사채이자 또는 원금의 주채무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때마다 곧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합니다.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

같은 제9조 제2항 제2호의 통지나 제10조 제2항에 의한 지급불능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제10조 제3항에 의한 주채무 이행 통지가 없는 때에는 사채원리금의 지급기일 도래 후 사채권자의 청구있는 대로 을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보증채무로서 사채원리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 구상과 지연배상금

- ① 갑이 제11조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을은 곧 갑에게 이를 상환합니다.
- ② 을이 제1항에 따라 곧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그 금액에 대하여 제3제3항에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사전구상

갑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구상금은 기일에 지급할 사채원리금을 사전구상일로부터 기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사법정금리로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할인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책임

- ① 갑은 사채원리금 지급보증에 대한 책임 외에 사채에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 ② 사채의 발행·관리·상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책임은 모두 을이 지기로 합니다.

제15조 통지사항

을은 약정상의 사채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다른 사채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6조 계약의 실효

을이 이 약정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연히 이 약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17조 약정서의 열람·등사

갑과 을은 을의 주주·채권자 또는 사채증모자나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등사하게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청구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8조 약정비용

이 약정에 관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9조 약정의 변경

- ① 갑은 채권의 보전과 투자자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이 약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20조 등록사채에 관한 특약

- ① 을이 당해 사채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등록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 약정서 제5조 및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조 및 제8조의 “사채권”을 사채로 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채권자가 당해 사채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권의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 을은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채권을 발행합니다.
- ④ 을이 등록사채를 발행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등록부” 기재통지를 받은 경우 그 사본 1부를 원금납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합니다.

제21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종 별	증서기·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금 액 (계약액)	20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수익자				

※ 주의 : 채무자 본인명의 담보인 경우에만 본란을 사용합니다.

- ⑤ 을이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담보 이외에 다른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갑은 담보목적물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담보목적물에 접근 또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 을은 이 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 채 비 율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비율	%	%	%	%	%
()비율	%	%	%	%	%

-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을은 이 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갑이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갑과 을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23조 자료의 제출 등

- ① 을은 갑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갑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 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 ② 을은 갑이 을에 대한 신용평가 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갑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24조 진술 및 보장, 사전구상채무의 발생 등

- ① 을은 이 약정체결일, 보증개시일 및 각 사채 원리금지급일에 은행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1. 을은 그 설립준거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 을은, (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나) 자기명의로 자산을 소유하고, (다) 이 약정에 따른 채무 기타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라)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며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을은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고, 그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업 내부의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 을은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유효,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인허가상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이 약정에 따른 을의 의무는 유효,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으며, 이 약정의 제조건 및 법률에 따라서 유효,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6. 을에 의한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이행과 이 약정에 따른 을의 지급은 (가)을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고, (나)을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을이 당사자이거나 을의 자산에 효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상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당해 계약상 채무불이행사유를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7. 을의 재정상황 또는 을의 이 약정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을이 아는 한 그러한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제기될 우려도 없습니다.
 8. 을은 이 약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은행이 요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은행에 제공하였어야 할 모든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을이 아는 한 그러한 정보는 정확합니다.
 9. 을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각종 지급의무를 이행할 자력이 있습니다.
 10. 을은 각 거래실행일에 을 및 을의 회사사 전체에 대하여 영업, 재무상황 및 운영에 중대하게 불리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② 을은 이 약정에 따른 거래실행일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이 해당 거래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한전의 변제 사유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사유
 3.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각 사유
-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5항에 따라 사전구상채무가 발생함에 동의합니다.
1. 을이 이 약정상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공한 보증, 담보 계약 및 신용보강약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을이 법원의 최종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있는 후에 그 판결 또는 명령에 따른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을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법하게 위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을이 이 약정상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을이 이 약정에 따라 제공한 진술 및 보증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5. 을이 이 약정 외에 다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정에 따른 거래의 실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갑은 그로 인한 영업상 기대 이익의 상실 등 을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 동의합니다.
- ⑤ 을이 이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은행이 손해, 손실, 비용 또는 채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은행에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25조 기타특약사항

을 : (인)

--	--

이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 지급보증 의뢰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1. 수령함 2. 들었음)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성명 : (인)
2. 위 약관과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성명 : (인)
상 담 자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